

1. 개정이유

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,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·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생이 사용·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, 외박 후

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^{22:00 → 21:00} 복귀시간 조정하여

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(안 제35조)

나.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,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

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.(안 제25조의2)

다.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

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(제2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